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800

2025. 10. 27.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15. / 박윤옥 의원 등 9명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 법률이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변화된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며,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개정

- (기존)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

→(변경)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
-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, 안 제7조)
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- 교육 및 정보 제공, 보험가입 및 참여자 보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~ 안 제11조)
- 노인생산물 우선 구매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□ 조문검토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4. 11. 1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
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책무로 규정하고,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- 또한,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물 우선구매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】

의안번호

801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15. / 이경숙 의원 등 8명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장애인생산품등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구매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(안 제1조~제4조)
-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이행계획 수립 규정 (안 제5조~제6조)
- 우선구매 촉진, 판매지원, 포상 규정 (안 제7조~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□ 조문검토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4조 및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

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- 세부내용은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,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이행 계획수립, 우선구매 촉진, 판매지원,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
- 특히 제6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1.1% 이상으로 정하고, 3%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「202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계획」의 의무비율 상향(1.0%→1.1%)을 반영함과 동시에, 우리 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자율적 목표 설정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,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2023년 1.03%, 2024년 1.12%로 법정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, 조례 제정 이후에는 단순한 구매비율 관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질 경쟁력 강화, 시 산하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실무교육 내실화, 지역내 생산시설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구매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교육, 홍보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4. 질의·답변요지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어린이공원·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번호

802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15. / 전해연 의원 등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,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 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시장의 책무, 조성의 기본방향, 통합놀이터 설치에 대해 규정 (안 제4조부터 제6조)
- 어린이놀이터등의 조성·관리계획 (안 제7조)
- 안전시설 설치,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(안 제8조부터 제9조)
- 행위의 제한, 조치 및 지도·감독 (안 제10조부터 제11조)
- 자원봉사활동 등 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□ 조문검토

- 동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-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어린이공원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, 안전 관리, 행위 제한 등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상위법인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화 하였고,
- 또한,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 ‘통합놀이터 설치’와 관련하여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목적에 부합하고,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되거나 저촉될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·관리 하는데 적합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, 상위법령과도 부합하여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번호

803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0. 15. / 전해연 의원 등 10명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관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1조부터 제3조)
- 시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(안 제4조부터 제5조)
- 지원 및 배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(안 제6조)
-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·운영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7조)
- 임산부의 날,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8조부터 제9조)
- 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□ 조문검토

- 동 조례안은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편의와 배려를 통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- 세부내용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, 임산부 산전·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,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며, 임산부 예우 및 편의지원 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, 민원처리 우선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와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 조성으로 최근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임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 목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실효성 높은 임산부 지원 정책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입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】

의안번호

826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5. 10. 14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희망케어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5. 12. 31.로 만료됨에 따라,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(남양주시복지재단)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 내용

- 희망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 - 사회복지관 업무 및 희망케어센터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 등

2) 위탁시설 개요

- 수탁기관 :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(대표자 : 원병일)
- 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5. 12. 31. (5년)

○ 위탁시설 : 4개소 현황

시설명	소재지		면적(m ²)	정원(명)	관할지역
동부희망케어센터	화도읍 경춘로달피1길 20-8		593	13	화도·수동·호평·평내
서부희망케어센터	(본관)	다산중앙로123번길 47 (다산동, 다산메트로3단지)	1,023	16	진건·퇴계원·다산동
	(분관)	다산중앙로82번길 87-17 (다산동, 센트럴파크6단지)	976		
남부희망케어센터	와부읍 월문천로 35		281	12	와부·조안·금곡·양정
북부희망케어센터	진접읍 금강로 1509-26		317	13	진접·오남·별내동(면)

○ 위치도

동부희망케어센터 ■ 화도읍 경춘로달피1길 20-8	서부희망케어센터 ■ (본관) 다산중앙로123번길 47 다산메트로3단지(좌) ■ (분관) 다산중앙로82번길 87-17 다산센트럴6단지(우)
남부희망케어센터 ■ 와부읍 월문천로 35	북부희망케어센터 ■ 진접읍 장현리 68-39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동 1층

3) 민간위탁 기간

○ 2026. 1. 1. ~ 2030. 12. 31. (5년)

4)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재계약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2에 따른 ‘계약기간 갱신 여부’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(남양주시 복지재단)과 재계약 추진

5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위탁비용 및 산출근거

- 2026년 예산안 반영

(단위: 천원 / 명)

구분		계	동부	서부	남부	북부	비고
총계		3,907,704	896,770	1,218,149	897,231	895,554	
희망케어센터 운영	인건비	2,133,366	485,483	696,355	458,531	492,997	시비 100%
	운영비	560,459	121,864	225,322	120,732	92,541	
	사업비	29,000	7,000	8,000	7,000	7,000	
소계		2,722,825	614,347	929,677	586,263	592,538	
무한돌봄센터 운영	인건비	1,134,879	269,923	275,972	298,468	290,516	도비40% 시비60%
	운영비	50,000	12,500	12,500	12,500	12,500	
소계		1,184,879	282,423	288,472	310,968	303,016	
센터장		4	1	1	1	1	총 54명
직원 (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)		50 (20)	12 (5)	15 (5)	11 (5)	12 (5)	

6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분	검토 의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희망케어센터는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복지사업의 도덕성, 법적 건전성, 전문성을 갖춘 사무를 수행하며, 일반적인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는 구분됨.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○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 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한 복지사업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함.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을 통해 희망케어센터의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.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운영비 정산보고,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·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.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시민의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,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활동으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함.
종합 의견	○ 희망케어센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 수행을 수행하고 있음. ○ 시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하여,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내실 있는 복지사업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함. ○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균형 있는 배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.

7)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

- 법적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,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
- 평가주체 :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
- 평가등급

등급	A	B	C	D	F
점수	90점이상	80점 이상~90점 미만	70점 이상~80점 미만	60점 이상~70점 미만	60점 미만

- 평가지표 : (2022년) 6개 영역, (2024년) 5개 영역

2022년 평가영역		배점(%)	시설 종류별 지표 수 (개)	
A. 시설 및 환경		4	3	
B. 재정 및 조직운영		30	15	
C. 프로그램 및 서비스	사례관리	14	4	
	서비스제공	25	프로그램 제출수	4
			실지표수	3
			총지표수	12
	조직화사업	8	3	
D. 이용자의 권리		6	4	
E. 지역사회 관계		8	4	
F. 시설운영 전반		5	3	
총계		100	실지표수	39
			총지표수	48

2024년 평가영역		배점(%)	시설 종류별 지표 수 (개)	
A. 시설 및 환경		4	3	
B. 재정 및 조직운영		36	19(가산점 포함)	
C. 프로그램 및 서비스	사례관리	14	4	
	서비스제공	27	프로그램 제출수	4
			실지표수	3
			총지표수	13
	조직화사업	8	3	
D. 이용자의 권리		6	4	
E. 시설운영 전반		5	3	
총계		100	실지표수	39
			총지표수	49

○ 2022년 평가 결과 (평가 기간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)

시설명	평균등급	평가 영역별 등급					
		시설 및 환경	재정·조직 운영	프로그램 서비스	이용자의 권리	지역사회 관계	시설운영 전반
동부희망케어센터	C	A	D	C	B	B	A
서부희망케어센터	B	C	C	A	A	A	A
남부희망케어센터	B	A	C	A	B	A	A
북부희망케어센터	A	A	B	A	A	C	A

○ 2024년 평가 결과 (평가 기간 : 2022. 1. 1. ~ 2023. 12. 31.)

시설명	평균등급	평가 영역별 등급				
		시설 및 환경	재정·조직 운영	프로그램 서비스	이용자의 권리	지역사회 관계
동부희망케어센터	A	A	B	A	A	A
서부희망케어센터	A	A	A	A	A	A
남부희망케어센터	A	A	C	A	A	B
북부희망케어센터	A	A	C	A	A	B

8) 향후계획

- 2025. 10월 임시회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재계약 체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□ 안전검토

-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,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(남양주시복지재단)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전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과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

장은 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희망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복지관 업무 및 희망케어센터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무한돌봄 역시 센터운영과 네트워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「무한돌봄센터 운영」 사무는 사회복지관 고유업무 또는 「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기에 위탁사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는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·운영하는 복지시설인 만큼,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복지사업 운영 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임. 기존 수탁기관인 남양주시 복지재단과의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원활한 운영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,
- 그 간 시의회에서는 복지재단 및 희망케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역할 정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,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요지 :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】

의안번호

827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5. 10. 14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득했으나, 재계약 기간이 변경되어 변경동의를 받는 사항임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및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에 따라 시의회 변경 동의안 제출

■ 추진근거 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,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 내용

-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
 - 돌봄, 숙제지도, 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프로그램, 등·하원 지원 등

2) 위탁시설 개요

구분	위치	면적 (㎡)	정원	위탁 방법	(변경)위탁기간	現수탁기관
재계약 (3호점)	덕송3로 27 (별내동, 위스테인별내)	75.59	20	지정 위탁	2025.11.01.~ 2028.04.30. (2년 6개월)	위스테인별내 사회적협동조합 (대표 김경환)

3) 민간위탁 기간 변경

- 변경 전 : 2025.11.01. ~ 2030.10.31. (5년)
- 변경 후 : 2025.11.01. ~ 2028.04.30. (2년 6개월)
- 변경사유
 - 당초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『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』에 따라 5년 재계약을 추진 중이었으나, 공간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5년 이내 이므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 및 「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지역돌봄협의체 소위원회를 거쳐 재계약 기간 변경

4)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지역돌봄협의체 소위원회 구성하여 항목별 채점표에 따라 심의
 - 2025년 9월 제3차 심의 완료

심의번호	심의안건	심의내용	심의결과
2025-6호	재계약 기간 조정	재계약 기간 조정 동의 여부 (당초)5년 (변경) 2년 6개월	동의
	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반영	재계약의 경우로 지난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반영 동의 여부	동의
2025-7호	수탁자 선정	기존 수탁자의 적격성을 평가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수탁자 선정	선정

5) 소요계산 및 산출 근거

○ 위탁경비 : 158,196천원 (1개소/년)

산출근거		합계 (단위: 천원)	비고
계		158,196	
인건비	·(기본급) 센터장 : 3,245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전일제) : 3,012천원 × 12개월 × 1인 ·(기본급) 돌봄교사(시간제) : 1,506천원 × 12개월 × 1인 ※ 월급여,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, 퇴직적립금 포함 ※ 개인별 호봉제 적용에 따른 기본인건비 초과분 ※ 명절수당 : 기본급 × 60% × 2회 × 2명(센터장, 전일제 종사자)	130,896	기본인건비 + 추가인건비 (호봉적용) + 명절수당
운영비	·(1,500천원 × 12개월) + (300천원 × 2개월) ※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용비, 수수료, 여비, 기타운영비 등	18,600	냉난방비 별도
돌봄 프로그램비	· 200천원 × 12개월	2,400	
급식비	· 4,500원 × 25명(아동 정원수) × 56일(방학일수) ※ (지원기준) 중식 1식 단가 9,000원의 50% 보조	6,300	*방학일수(안) 겨울방학 : 40일 여름방학 : 16일

6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돌봄종사자 채용, 돌봄 프로그램 구성, 학부모 관리 및 돌봄센터 시설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 ○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초등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돌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안정적인 사업 운영 가능
경제적 효율성	○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콘텐츠 활용 및 관리인력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제고 ○ 외부강사 및 외부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교육비 절감

구 분	검 토 의 견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오랜기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원활한 돌봄프로그램 운영·관리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기평가 대상 시설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(지도감독) 및 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),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,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민간 위탁을 통해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
총 합 의 견	○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지원 ○ 전문 자격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채용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가 가능 ○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고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

7)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성과평가

- 근거 :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(성과평가)
- 대상 :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평가 완료('24. 11.)
-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결과 반영
- 평가 결과

구분	총배점	시설별 득점	결과
3호점	100점	98점	통과

○ 지도점검 결과

- 근거 :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지도·감독)
- 대상 :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

구분	결과결과			지적사항/조치결과
	준수	미흡	가점	
2021년	24	-	-	· 특이사항 없음
2022년	24	-	2	· 특이사항 없음
2023년	23	1	-	· 서류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서류편철 및 정리가 필요함 → 조치완료
2024년	23	1	-	· ‘22년도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예수금 통장잔액에 있음 → 조치완료(반납조치)
2025년	점검 예정(2025. 10.)			

※ 준수 / 미흡 / 가점 항목을 체크하고 ‘계’의 해당 항목 상단 칸에 각각의 합산 값 기재
(준수 및 미흡 : 최대 24 / 가점 최대 3)

※ 점검항목(6개) : 시설운영환경, 시설운영, 아동서비스, 인적관리, 회계처리, 위생안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- 본 동의안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은 「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중 3호점(별내 위스테인별내)의 위탁기간을 당초 5년(2025.11.1~2030.10.31.)에서 2년 6개월(2025.11.1~2028.4.30.)로 단축하여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
- 이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위스테인별내 커뮤니티 공간의 무상사용기간이 2년 6개월만 잔존함에 따라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간을 공간 사용기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,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

- 또한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및 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에서는 이미 동의받은 계약이라도 기간·금액 등 주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, 본 변경 동의안의 재제출은 절차상 적법함
- 검토 결과, 본 동의안은 기존 의결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며, 상위법령 및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상 재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, 법적·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향후 동일 유형의 위탁계약 시, 시설 사용(무상임대) 기간과 위탁 기간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·조정하여 재동의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변경 계약 이후에도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】

의안번호

828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5. 10. 14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남양주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23조(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)
-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○ 민간위탁 필요성

-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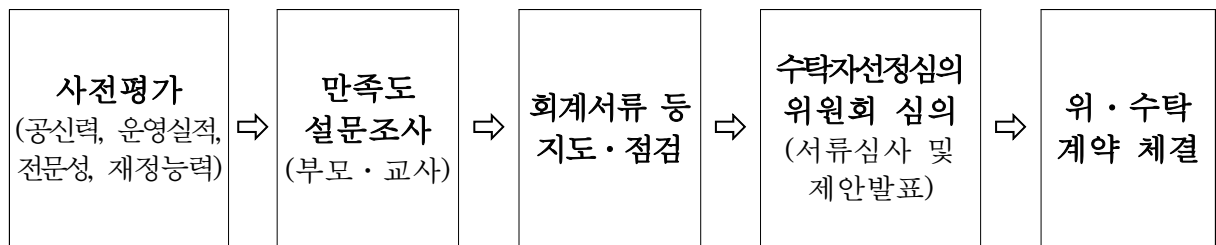
- 1) 위탁사무 내용 :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- 2) 위탁시설 개요

3) 위탁시설 : 시립어린이집 2개소(재계약 1, 재위탁 1)

연번	어린이집명	현 위탁체	소재지	규모 (㎡)	정원 (명)	위탁기간	위탁방법
1	시립트레지움	송○자	화도읍 비룡로 186	355	80	'25.12.07.~ '30.12.06.	재계약
2	시립다산자이	최○희	다산중앙로 153	373	70	'26.3.1.~ '31.2.28.	재위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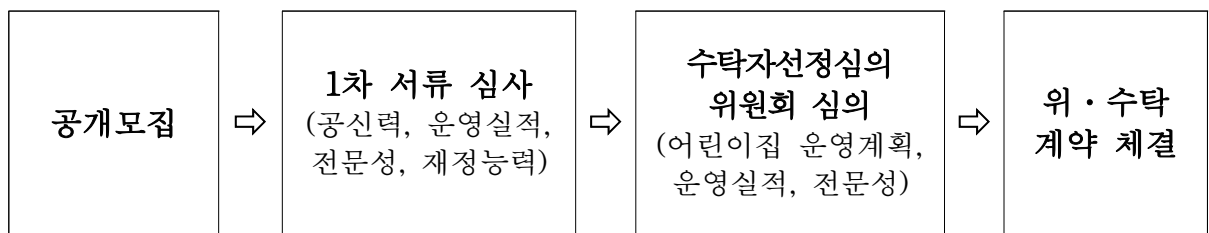
4)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(재계약)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



※ 지도점검 결과가 반영된 성과평가 실시 후 70점 이상시 재계약, 70점 미만 시 공개모집(재위탁) 추진

○ (재위탁)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



※ 최종결과 70점 이상, 1·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

5)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운영재원 :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

○ 소요예산 : 1,714,495천원(2025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)

(단위 : 명, 천원)

연번	어린이집명	정원	보육 교직원	소요예산 및 산출내역		
				계	인건비 (보육교직원)	운영비 (관리운영비, 보육활동비 등)
계				1,714,495	1,108,643	605,852
1	시립트레지움	80	22	1,017,818	652,954	364,864
2	시립다산자이	70	12	696,677	455,689	240,988

6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전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, 법적 건전성,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
경제적 효율성	○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,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

7)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

어린이집명	최종 결과	계 (100점)	1차 평가(40점)	2차 평가(60점)
			사전평가, 부모·교직원 만족도 조사, 회계점검	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
시립트레지움	적격	78.8	31	47.8

8) 향후계획

- 2025. 10. : (재위탁)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
- 2025. 12. : 2025년 제5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-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재위탁, 재계약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과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, 재계약 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절차는 이행되었으며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참여와 행정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탁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- 다만, 재위탁시 위탁기간이 5년인 만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·단체가 선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,

- 재계약하는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추진하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 “부모·교사 만족도조사” 등 정량적·정성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심 사 보 고 서

【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】

의안번호

829

2025. 10. 27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: 2025. 10. 14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5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5. 10. 27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의 운용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·군 분담금으로 지원함에 있어,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 업 명 : 202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
- 사업목적
 -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- 사업기간 : 2004년 ~ 지속추진 중

○ 출연금 개요

- 지원내용 :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2026년 출연금 : 80백만원

※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·군별 각80백만원 출연

○ 출연대상 :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

- 설립목적 :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갈등 중재·조정기구('03.11. 출범)
- 구성현황 : 환경부, 경기도, 7개시·군(남양주, 가평, 광주, 양평, 여주, 용인, 이천)

※ 환경부차관, 한강유역청장, 물환경정책관, 경기도 경제부지사, 7개 시장·군수, 의회의장, 주민대표

○ 출연현황

(단위: 천원)

합계	'04~'18	'19	'20	'21	'22	'23	'24	'25
1,390,000	83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

○ 주요 추진내용

-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추진
 -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등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의
- 팔당지역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
 - 팔당유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, 팔당수계 수변구역 지정현황 정밀조사 연구(2차년도), 팔당수계 수변구역 지정현황 정밀조사 연구(1~2차년도), 정기간행물 제작 등

○ 기대효과

- 환경부와 지자체, 지역주민 간의 갈등 중재와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팔당 상수원 지역의 수질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 실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봉규)

- 검토 결과 법률적 근거 등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,
-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함과 동시에 단계별 규제개편 계획수립 및 시범지역 운영 등 규제의 정밀한 재설계와 제도정비 로드맵 수립,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강화 등 법령정비 및 특례제도 도입에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